우리집 안심보험 보통약관

재산손해 조항

1.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 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라합니다)를 본 재산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②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③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2 회사는 아래에 정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본 재산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가재 (다만, 2.의 1은 제외합니다)

②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다만,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한합니다.

2.보험목적의 범위

위 1.의 1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 (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2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이상),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3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의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난방,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4 이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독립주택

㉯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 연립건물(연동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써 각 호,실이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

②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뜸,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의 1에서 정한 화재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③ 화재 또는 폭발, 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⑥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위 ⑦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⑨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⑩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2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의 2에서 정한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③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④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⑤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⑥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⑦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4.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③ 건물(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사할 때.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건물 또는 가재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뀔 때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앞뒤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손해가 위 2의 ①,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위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7.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2 회사는 위 1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9.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9.의 지급보험금에 위 2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8.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9.지급보험금

1 회사가 지급할 1.의 1의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때: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1.의 2의 도난손해가 생긴때에는 위 1에 관계없이 500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개당, 점당, 조당 1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4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합니다.

10.화재손해 위로금

1 회사는 1.의 1의 화재손해로 인하여 9.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화재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화재손해위로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11.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을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13.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3 위 1,2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14.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1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2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손해 조항

15.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손상 및 망가짐(이하「재물의 파손」이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 기재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16.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입은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②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⑤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⑥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⑨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⑩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⑫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⑬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7.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① 및②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위 1의 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8.손해방지의무

1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① 위 1의 ① 및 ②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위 1의 ③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위 1의 ④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9.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2,3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지급 보험금

1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2 위 1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 : 1억원

② 위 1의 ②,③,④, 및 ⑤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위 1의 ④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위 1의 ①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21.보험금의 분담

1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1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 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3 위 1, 2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신체손해 조항

23.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화재 및 폭발,파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응급비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는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 신체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10만원을 응급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구급차라 함은 119 구급대 및 129 응급환자정보센타의 지시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을 말합니다.

24.피보험자의 범위

1 위 23.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2 위 1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③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위 1,2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23.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지진,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⑤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 다만 23.의 2에 정한 응급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다만 23.의 2에 정한 응급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6.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7.피보험자의 변경

피보험자 본인이 이 계약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 본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8.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26.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앞뒤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손해가 위 2의 ①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9.손해의 통지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0.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23.의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본인 및 배우자	기타 가족
사망보험금	각각 1억원	1인당 2천만원

31.후유장해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23.의 1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 (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을 때에는 위 30.에서 정한 피보험자별 사망보험금 해당액에【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 (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 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 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2.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마다 30.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33.보험금청구권의 상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자녀 상해손해 조항

34.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24.에서 정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이하「자녀」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본 자녀상해손해 조항 및 일반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위 1에서 자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중인 만 1세이상 만 20세미만의 자녀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만 1세이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

4 위 3의 피보험자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나 자녀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자녀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자녀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자녀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자녀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형의 집행

⑨ 지진,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자녀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34.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반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 또는 시운전(단,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어부,사공,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6.자녀 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자녀가 위 34.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2,000만원에【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녀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자녀의 직업,연령,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 (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 장해 및 발(가락) 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 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자녀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7.자녀의료비 보험금

1 자녀가 34.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조항

38.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그러나 40.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9.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0.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1.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2.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

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3.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4.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로 계산한 이자로 더하여 드립니다.

45.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46.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47.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 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1을 적용합니다.

48.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효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 <연 11%>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0. 및 41.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9.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보험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이외의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53.의 1,,3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보험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0.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뺍니다.

구 분	3년 만기	5년 만기 또는 10년 만기
만기환급금	300만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해당액

51.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도난보험금 청구시에는 도난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④ 그밖에 필요한 증거서류

52.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회사가 51.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의 경우 10일,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3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그러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3.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9.의 화재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계약의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한 보험목적이 2이상인 때에는 각각 적용됩니다.
2 회사가 31.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30.에 정한 사망보험금 해당액의 80% 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한도는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30.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사망보험금 해당액의 80%를 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4 회사가 36.에 정한 자녀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1,600만원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자녀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한도는 감액되지 아니하며, 1,600만원을 넘는 자녀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자녀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5 위 1,3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도난,일상생활배상책임,응급비용,자녀의료비 보험금은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54.보험계약자 대출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별표2】에 정한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55.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56.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57.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8.보험보증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중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 (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59.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6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61.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1.자녀상해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우리집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6. 및 37.에서 정한 자녀 후유장해보험금 및 자녀의료비 손해를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2.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은 3년만기 계약 또는 5년만기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2.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집 안심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보험계약의 체결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2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우리집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40. 및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3.사고카드 계약

1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위조·변조된 카드,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6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4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6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20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눈꺼플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귀의 청력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에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4)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34
15)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20
16)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15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 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4) 지라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별 표2】 **해지환급금 명세표**

기본계약

1. 3년 만기

가. 재산손해 (화재손해, 화재손해위로금)

-해지환급금 없슴

나. 기타손해 (도난, 배상책임, 화재상해, 응급비용, 자녀후유장해, 자녀의료비)

경과기간	연납
1년	779,550
2년	1,846,900
3년	3,000,000

2. 5년 만기

가. 재산손해 (화재손해, 화재손해 위로금)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기준)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2,000	2,610	3,080	3,730
2년	5,240	6,760	7,980	9,420
3년	8,740	11,240	13,290	15,570
4년	12,520	16,070	19,010	22,220
5년	16,600	21,300	25,200	29,400

나. 기타손해 (도난, 배상책임, 화재상해, 응급비용, 자녀후유장해, 자녀의료비)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379,960	491,780	585,500	679,710
2년	994,700	1,279,300	1,517,970	1,757,990
3년	1,658,840	2,130,090	2,525,350	2,922,900
4년	2,376,320	3,049,220	3,613,660	4,181,400
5년	3,151,450	4,042,200	4,789,400	5,541,000

3. 10년 만기

가. 재산손해 (화재손해, 화재손해 위로금)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기준)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180	200	220	500
2년	1,240	1,370	1,450	1,810
3년	2,390	2,630	2,780	3.220
4년	3,640	3,990	4,210	4,740
5년	4,980	5,470	5,770	6,380
6년	6,430	7,060	7,440	8,150
7년	8,000	8,770	9,250	10,070
8년	9,690	10,630	11,210	12,140
9년	11,520	12,630	13,320	14,380
10년	13,500	14,800	15,600	16,800

나. 기타손해 (도난, 배상책임, 화재상해, 응급비용, 자녀후유장해, 자녀의료비)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33,480	40,110	44,370	47,730
2년	235,700	261,360	277,770	290,940
3년	454,170	500,390	529,920	553,680
4년	690,180	758,600	802,310	837,520
5년	945,140	1,037,560	1,096,590	1,144,170
6년	1,220,570	1,338,910	1,414,490	1,475,430
7년	1,518,120	1,664,470	1,757,940	1,833,300
8년	1,839,570	2,016,180	2,128,960	2,219,920
9년	2,186,840	2,396,130	2,529,790	2,637,590
10년	2,562,000	2,806,600	2,962,800	3,088,800

자녀상해 부담보 특약

(3년 만기 및 5년 만기에만 적용)

1. 3년 만기

가. 재산손해 (화재손해, 화재손해위로금)

- 해지환급금 없슴

나. 기타손해 (도난, 배상책임,화재상해, 응급비용)

경과기간	연납
1년	785,530
2년	1,850,000
3년	3,000,000

2. 5년 만기

가. 재산손해 (화재손해, 화재손해위로금)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기준)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2,000	2,610	3,080	3,730
2년	5,240	6,760	7,980	9,420
3년	8,740	11,240	13,290	15,570
4년	12,520	16,070	19,010	22,220
5년	16,600	21,300	25,200	29,400

나. 기타손해 (도난, 배상책임, 화재상해, 응급비용)

경과기간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1년	118,340	153,170	182,430	211,980
2년	309,810	398,460	472,860	547,850
3년	516,670	663,450	786,630	910,710
4년	740,130	949,730	1,125,600	1,302,710
5년	981,550	1,259,000	1,491,800	1,726,200